

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

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

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!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예방
안전보건공단



»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?



☑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

- ▶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“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”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·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.
- ▶ 협력업체(하청)는 모기업(원청)에 비해 안전·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
- ▶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‘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’을 수립하고,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 등 안전 보건활동 활동에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.

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(2022.1.27.)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

- ▶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가 중대재해 예방의 시작입니다.



1.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

프로그램 참여 대상

- » (규모) 근로자 50명(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포함) 이상 모기업 및 그 협력업체
 - 사내 협력업체와 유해·위험물질 제조·사용 또는 정비·보수 등 고위험직업 사외 협력업체는 모두 참여

「유해·위험물질 제조·사용 사업장」의 범위

- ①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 물질(51종)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·사용하여 PSM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장
- ② 고독성(발암성·생식세포 변이원성·생식독성) 물질(78종) 제조·사용 사업장
- ③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빈도가 높은 삼산화안티몬, 클로로포름, 시안화수소, 메틸알코올,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제조·사용 사업장

» (업종) 전 업종

- 다만, 조선업 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대상 및 건설업 사업장은 제외

» (선정) 사업대상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·선정

사업대상 우선선정 기준

- ① 협력업체 중대재해 발생, 재해다발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모기업
- ② 전년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
- ③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
-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기업
- ⑤ '12 ~ '20년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모기업

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

- » 참여 신청기간: 2021. 3. 2(화) ~ 3. 12(금), 2주간
- » 접수처: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, 지역본부 또는 지사
- » 심사 및 승인: 2021. 3. 26(금)까지 완료



참여 사업장에 대한 평가등급별 혜택

평가 등급	평가등급별 혜택	적용 시기	적용대상	
			모기업	협력업체
A등급 (상위 1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기감독 일부 유예* 및 연기요청권(90일) • 정부포상 우대 • KOSHA 18001 및 KOSHA-MS 사후, 연장심사비 1/2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자체감독 대상 선정 시 유예 - 단, 대형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물의 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 	참여 다음년도	○	○
A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포상(산재예방 유공) 우대 • KOSHA 18001 및 KOSHA-MS 사후, 연장심사비 1/2 감면* * KOSHA 18001 및 KOSHA-MS 인증업무 처리규칙 별표5 참조 	참여 다음년도	○	○
모든 등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OSHA-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(50인 미만) * KOSHA-MS 컨설팅비용 지원업무 처리지침 제7조 참조 (지침 제200호) 	수시	×	○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KOSHA-MS 실태심사비 면제 	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(참여 승인 전까지)	×	○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클린사업장 조성 보조 및 산재예방시설 용자 우선지원 	참여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	×	○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혜택 부여(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함) -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% 적용 - 보증요율 0.2%p 감면 	참여 다음년도	○	○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(60억 ⇨ 100억) *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단 	참여 다음년도	○	○

※ 비고: 절대평가 결과 90점 이상은 A등급, 90점 미만 ~ 80점 이상은 B등급, 80점 미만은 C등급

우수사례 발표대회

- »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개최(7월)
 - ※ 세부일정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
- »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업장 발굴 및 전파 목적
 - ※ 안전보건공단(www.kosha.or.kr) ⇨ 사업소개 ⇨ 산업안전 ⇨ 안전보건
공생협력 프로그램 ⇨ 추진사례

2.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



구분	내용
사업 안내·설명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사업장에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[고용노동부, 공단] • 사업취지, 추진 절차 및 내용, 참여혜택 등 설명회 개최[고용노동부, 공단]
프로그램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내·외 협력업체와 공생협력단 구성 및 프로그램 추진 세부계획 작성[모기업] • 참여대상 협력업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내 협력업체[전체], 사외 협력업체[자율] ※ 단, 사외 협력업체 중 정비·보수, 유해·위험물질 제조·사용 등 고위험 작업 업체는 모두 포함
프로그램 접수·심사 (계획수립 컨설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[모기업] •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, 보완요구, 불승인[고용노동부, 공단] ※ 당해년도 신규 참여 희망사업장이 요청 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[공단]
위험성평가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실시 지원[모기업] -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실시 (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이수)
위험성 감소계획 제출·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광역본부,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[모기업] ※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, 예산 등 지원계획 포함 • 협력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[모기업]
현장 기술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,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[공단]
추진실적 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광역본부,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[모기업]
확인 기술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출된 추진실적에 대해 현장 확인[공단] • 위험성 감소대책이행결과 및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[공단]
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[고용노동부, 공단]

3.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

모기업 부문

- » 공생협력 추진의지
 - ①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

모기업·협력업체 부문

- »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
 - ① 공생협력 운영 방침·규정의 수립·전달·확인 체계
 - ②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
 - ③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·집행의 적정성



3.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

»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

- ① 위험성평가 계획
- ② 위험성평가 이행
- ③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
- ④ 지속적 개선
- ⑤ 기록 및 관리



»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

- ① 계획대비 이행도
- ②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정도
- ③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노력 정도
- ④ 만족도 조사 및 환류
 - ④-1.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
 - ④-2.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

협력업체 부문

»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

- ①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
 - ②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
 - ②-1.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 재해수준
 - ②-2. 참여 협력업체의 당해년도 사고사망 발생 여부 (감점)
- ※ 평가지표는 3월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하여 공지 예정



4.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참고사항



중대재해처벌법 공포(2021.1.26.)

-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규입니다.
- 시행시기: (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)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(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) 공후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- ※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개인사업주에 한함) 또는 경영책임자는 적용 제외

안전·보건계획 이사회 보고·승인제도 시행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·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(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): 2021.1.1.부로 시행

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

• 위험성평가란?

- »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

○ 위험성평가 컨설팅

- » 사업장의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발굴 능력 향상 및 위험성평가 인정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
- » 대상 : ①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(건설업 제외)
 ② 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의 건설공사

○ 위험성평가 인정

- »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사업
- » 대상 : ①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(건설업 제외)
 ②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의 건설공사

○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

- »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율 20% 인하 (50명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해당)
- »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- »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
- »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% 적용, 보증요율 0.2%p 감면
- 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(60억→100억)
 ※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kras.kosha.or.kr>) 참조



안전투자 혁신사업

○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

※ 3년간(2021~2023년) 9,084억원 (2021년 : 3,271억)

구분	안전투자 혁신사업
지원대상	•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① 안전인증제도 이전 제작된 위험기계·기구* 보유 사업장 * - 이동식크레인(2009년 9월 30일 이전 제작) -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(2009년 6월 30일 이전 제작) - 권동식 리프트 ② 뿌리산업(주조, 소성, 표면처리업 중심)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보유 사업장
지원방식	• 리스 보증금 or 할부금융 선수금 or 보조금을 지원
신청방법	• 온라인(https://anto.kosha.or.kr) 신청, ☎ 문의처 : 1644-4555
지원내용	• 위험기계 교체 또는 노후공정 개선소요비용의 50%(1억 한도)

4.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참고사항

클린사업장 조성지원

»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·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



구분	클린사업장 인정	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- 고용노동부, 공단, 민간기관 감독·점검·기술지원 사업장(노동부·공단이 직접 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) -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(건설업 제외) 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, 굴착기, 로더, 타워크레인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태양광 설치·작업공정 보유사업장 (50억 미만 건설업) 엘리베이터 설치·작업공정 사업장 (50인 미만 건설업 본사)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조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에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※ 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류 일체 	
지원금액 및 지원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금액 : 사업장 당 3,000만원 까지 ※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 ① 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 범위) ②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③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④ 고위험업종(산재보험료를 상위업종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비율 :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정액 ※ 이동식크레인·고소작업대, 굴착기, 로더, 타워크레인 등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

※ 공통요건 : 산재보상보험가입 및 보험료 완납 조건

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

»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



구분	용자지원 내용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(300인 미만 우선지원)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(고용노동부 승인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een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지원제외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용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·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·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후 지급 사업장은 용자 신청·접수 불가 </div>
용자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사업장당 10억원 한도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
신청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공단 지역별 일선기관에 우편 및 직접방문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※ 제출서류 :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지원 신청서류 일체
지원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※ 프레스, 공작기계(CNC 등), 크레인, 사출성형기, 산업용 로봇, 컨베이어, 지게차, 승강기, 혼합기, 분쇄·파쇄기 등 ·유해 또는 위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·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·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

안전보건공단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



입선기관명	관 할 구 역	전화번호
서울광역본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(7층, 8층)	02-6711-2826
서울북부지사	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(7층, 8층)	02-3783-8335
강원지역본부	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(2층)	033-815-1014
강원동부지사	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(3층)	033-820-2572
부산광역본부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	051-520-0504
울산지역본부	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(2층, 4층)	052-226-0523
경남지역본부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	055-269-0553
경남동부지사	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합동청사 (4층)	055-371-7540
광주광역본부	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(8층, 9층, 11층)	062-949-8764
전북지역본부	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전주지청 (4층)	063-240-8543
전북서부지사	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(2층)	063-460-3623
전남지역본부	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(7층)	061-288-8752
전남동부지사	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	061-689-4952
제주지역본부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(4층)	064-797-7505
인천광역본부	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	032-510-0581
경기북부지사	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(1층)	031-828-1951
경기중부지사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9 대신프라자 (3층)	032-680-6551
경기지역본부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(10층)	031-259-7125
경기서부지사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제이엘컨벤션웨딩홀 (2층)	031-481-7513
경기동부지사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17번길 3 소곡회관 (2층)	031-785-3322
대구광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(20층, 21층)	053-609-0552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(5층)	053-650-6855
경북지역본부	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	054-478-8016
경북동부지사	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	054-271-2041
대전세종광역본부	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	042-620-5653
충북지역본부	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KT (3층)	043-230-7122
충남지역본부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(3층)	041-570-3452

